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21회 정례회  
교육위원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 
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의안번호 제928호)

제안설명



2023. 12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경

(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, 보건복지위원회 위원)

□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 경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,

□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

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발생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 사업 예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,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동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주체에게 예산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.

이를 위해

안 제15조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을 받는 사업주체에게 사업집행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,

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

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